|  |  |  |
| --- | --- | --- |
| **화장품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48호해관총서:합리적 소비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화장품의 소비세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화장품 수입단계 소비세 세목세율표 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1 징수범위를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화장품으로 조정한다.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화장품 범위는 수입납세가격이 10 위안/ml(g) 또는 15 위안/편 (장) 및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조정후의 세목은 첨부를 참조한다. 1.2 수입단계 소비세 세율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2.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첨부: 화장품 수입단계 소비세 세목세율표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6년9월30일 |  | **关于调整化妆品进口环节消费税的通知**财关税〔2016〕48号海关总署：　　为引导合理消费，经国务院批准，对化妆品的消费税政策进行调整，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调整化妆品进口环节消费税税目税率，具体如下：　　（一）将征收范围调整为高档美容修饰类化妆品、高档护肤类化妆品。高档美容修饰类和高档护肤类化妆品界定标准为进口完税价格在10元/毫升（克）或15元/片（张）及以上。调整后的税目见附件。　　（二）将进口环节消费税税率由30%下调为15%。　　二、本通知自2016年10月1日起执行。附件：[化妆品进口环节消费税税目税率表](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279484/part/2279507.pdf)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6年9月30日 |